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아량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78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4일  
발 의 자 : 송아량 의원(1명)  
찬 성 자 : 김태호, 김호진, 송정빈,  
이광호, 이동현, 이승미,  
이은주, 정지권, 정진철  
의원(9명)

## 1. 제안이유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는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서울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부설 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하되,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공영주차장 및 시·구·소속기관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대 설치면수 제한 규정은 삭제하여 친환경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촉진하여 탈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 및 서울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증가시키고, 최대 설치면수를 10면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5조의3)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도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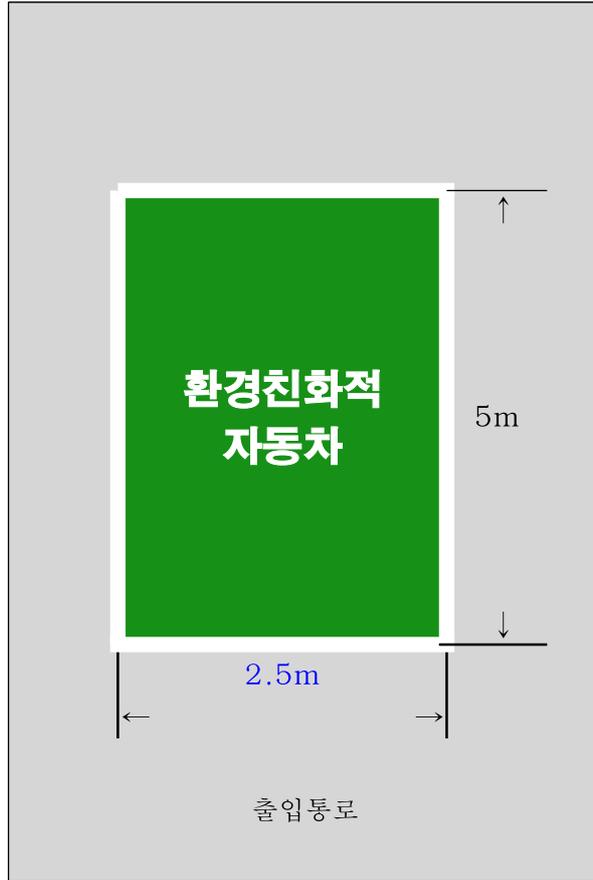
별도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의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도 제4호 서식>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2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2.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의3(<u>전기자동차 주차구획</u>의 설치기준 등) ①법제6조제1항에 따라 <u>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u>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u>3%</u> 이상으로 한다.</p> <p>② <u>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u></p> <p>③ <u>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 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u></p>	<p>제25조의3(<u>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u>의 설치기준 등) ①----- <u>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u>-----</p> <p>-----</p> <p>-----</p> <p>-----</p> <p>-----</p> <p>----- <u>5%</u> -----</p> <p>-----.</p> <p><u>&lt;삭 제&gt;</u></p> <p>② <u>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u>-----</p> <p>-----.</p>

<별도 제4호 서식>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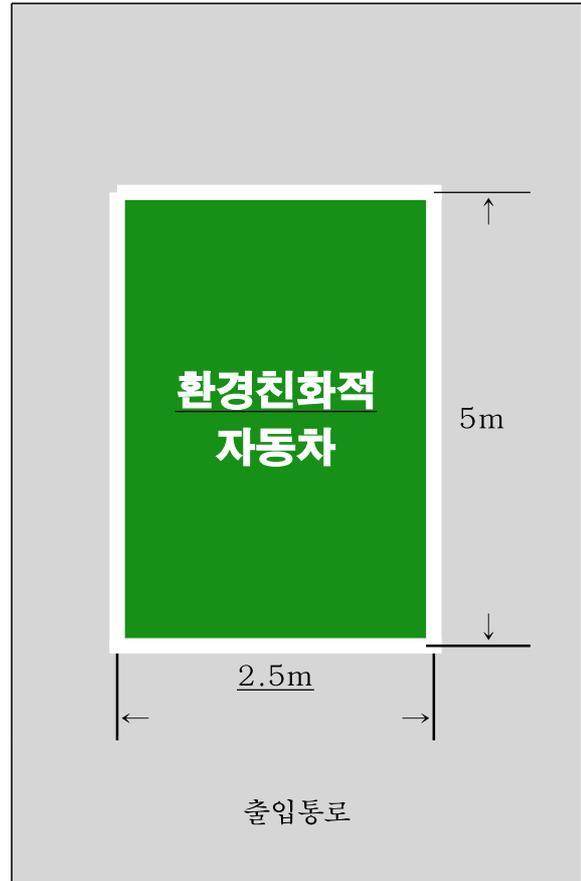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 이상×세로 5m 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신 설>

<별도 제4호 서식>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3제2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 이상×세로 5m 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2.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 498호, 2018.3.21.>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문서번호	2021101200000054
------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송아량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12	
회신일 : 2021.10.14	내용문의 : 02-2180-7954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347,164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347,164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2년 발생

-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소속기관의 청사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의 5%(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장으로 구획하되, 기존에 5%를 초과하고 있는 주차장의 경우 당초 전용주차면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347,164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안 제25조의3)		347,164	-	-	-	-	347,164
	소계(b)		347,164	-	-	-	-	347,164
□ 총 비용(b-a)			347,164	-	-	-	-	347,164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 347,164천원

= 전용주차구획 수 × 1면당 도색비용

= 916면 × 379천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수 :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소속기관의 청사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의 5%(소수점 이하는 올림)로 하되, 기존에 5%를 초과하고 있는 주차장의 경우 당초 전용주차면수를 적용하여 916면 산출

(단위 : 면)

연번	주차장명	총 주차면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수
	계	17,053	916
1	개화산역	322	17
2	개화역	483	25
3	구파발역	399	20
4	도봉산역	358	18
5	동대문	1,092	55
6	마포유수지	505	26
7	북정역	363	19
8	사당노외	184	10
9	세종로	1,260	63
10	수락산역	157	8
11	수서역	649	33
12	신방화역	199	10
13	신천유수지	221	12
14	영등포구청역	137	7
15	용산주차빌딩	561	29
16	잠실역	357	18
17	종묘	1,317	66
18	천왕역	328	17
19	천호역	1,432	72
20	학여울역	180	9
21	한강진역	176	9
22	화랑대역	328	17
23	훈련원공원	873	44
24	당산노외	237	12
25	여의서로	104	6
26	남부여성발전센터	128	7
27	영남	570	29
28	청계8	103	6
29	도봉산	185	10
30	창동역(서)	107	6
31	면목유수지	567	29
32	신청사	101	6
33	서소문청사	66	4
34	소방재난본부	47	3
35	시의회본관	13	2
36	서울시립대학교	878	44

37	보건환경연구원	148	9
38	인재개발원	217	11
39	농업기술센터	13	1
40	서울종합방재센터	15	2
41	119특수구조단	10	1
42	소방학교	126	7
43	상수도사업본부	25	2
44	중부수도사업소	30	7
45	서부수도사업소	37	8
46	동부수도사업소	36	6
47	북부수도사업소	26	5
48	강서수도사업소	17	4
49	남부수도사업소	47	6
50	강남수도사업소	42	3
51	강동수도사업소	41	3
5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71	4
5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81	5
54	뚝도아리수정수센터	34	2
55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84	5
56	암사아리수정수센터	54	3
57	강북아리수정수센터	31	2
58	서울물연구원	17	2
59	수도자재관리센터	19	1
60	한강사업본부	40	4
61	중량물재생센터	138	7
62	난지물재생센터	178	9
63	품질시험소	25	2
64	동부도로사업소	31	2
65	서부도로사업소	38	2
66	남부도로사업소	35	2
67	북부도로사업소	28	2
68	성동도로사업소	22	2
69	강서도로사업소	64	4
70	서울대공원	158	8
71	서울식물원	40	2
72	아동복지센터	18	1
73	차량정비센터	30	2

자료 : 서울시 주차계획과 및 총무과, 시의회, 각 본부 및 사업소 제출자료를 재정리

※ 1면당 도색비용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노외(평균) 주차장 도색 견적자료를  
참고하여 379천원 적용

- 산출내역 : (차선도색제거 30,795원+차선도색200,549원+주차블록 설  
치 39,710원)+제경비(40%)=379,476원

시의회사무처  
담 당 관  
추계세제팀장  
예산분석관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이원상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